



5월 종합소득세신고, 「신고도움 서비스」를 확인하세요

- 국세청

- ◆ (개요) 2019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6. 1.(월)까지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5. 1.부터 홈택스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성실신고확인이 필요한 납세자의 신고기한은 6. 30.(화)까지임.
- ◆ (세정지원) 국세청은 코로나19 조기 극복 지원을 위해 모든 납세자의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8. 31.(월)까지 연장합니다.
 - 매출 급감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신고기한도 신청을 통해 3개월 내에서 연장 가능합니다.
 - * 특별재난지역(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청도군·봉화군)에 주소를 둔 납세자는 신고기한을 직권으로 6. 30.(화)까지 연장함.
 - 소득세 환급대상자*가 6. 1.(월)까지 신고하는 경우 전년 보다 일주일 앞당겨(6. 23. 이전) 환급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 납부할 세액보다 미리 납부한 세액(원천징수 세액 등)이 많은 경우



이달의 세무신고업무

- ◆ (홈택스 신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고, 편리한 홈택스를 통해 비대면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규모 사업자 243만 명에게는 ARS(1544-9944)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모두채움 신고서*를 제공합니다.
 - * 국세청에서 수입금액부터 납부할 세액까지 기재한 신고서를 납세자에게 발송함.
 - 올해 처음으로 근로소득자에게 모바일 홈택스 신고, 기준경비율 신고자에게 주요경비 판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 세금계산서 항목을 분석하여 필요경비(재화 매입, 임차료) 해당 여부 제공
 - 올해 처음 신고하는 주택임대 분리과세 소득자를 위해 전용신고 화면, 종합·분리과세 세액비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전년도에 신고한 인적공제 자료, 이자·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을 불러와 신고서 항목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 ◆ (신고 도움자료) 국세청은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합니다.
 - 모든 납세자에게는 수입금액 자료, 소득공제 항목 등 신고에 필요한 자료와 과거 신고상황 분석자료*를 제공합니다.
 - * 3년간 신고현황, 업종별 유의사항, 매출액 대비 판매관리비 비율 등
 - 특히, 84만 명에게는 빅데이터, 내·외부 과세자료, 현장정보 등을 활용하여 「신고시 유의할 사항」을 제공하니, 신고 전에 꼭 열람하여 신고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주택임대 소득자에게는 절세 팁(Tip), 자주 묻는 질문 답변, 전자신고 따라 하기 동영상 등을 제공합니다.
 -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성실신고지원 > 주택임대소득 신고 안내

- ◆ (신고 후 검증)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를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엄정한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니,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20. 1. 1.부터 개인지방소득세를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자치단체 신고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 행정안전부(소자치단체)는 코로나19에 따른 납세자 지원을 위해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합니다.
 - 홈택스(국세청)·위택스(행정안전부) 실시간 연계로 개인지방소득세도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추가 인증 없이 위택스로 바로 이동하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가 자동으로 채워



- 저서 원클릭 신고 가능함.
- 전국 시·군·구청 신고창구에서도 국세·지방세 공무원이 함께 근무하면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지원합니다.
 - * 시행 원년인 올해는 모두채움 신고서를 받은 납세자 위주로 신고지원함.
 - 그 외, 모두채움 납부서 제공 등 다양한 납세편의를 제공합니다.

1. '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6월 1일까지

- ◆ (신고대상) '19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20. 6. 1.(월)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 *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20. 6. 30.(화)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 * 업종별 '19년 귀속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소득세법 § 70의2)
(도·소매 등) 15억 원, (음식·숙박업 등) 7.5억 원, (임대·서비스업 등) 5억 원
- 신고대상 소득은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이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 발생 소득입니다.
 -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소득세법 § 1의2①)
- ◆ (신고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면 쉽고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 모두채움 신고서*를 받은 소규모사업자 243만 명은 세무서 방문 없이 유선전화나 휴대전화를 통해 ARS(1544-9944)로 신고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팩스 신고도 가능합니다.
 - * 소규모납세자의 간편신고를 위해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미리 작성된 신고서
 - 5월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 홈택스를 통해 직접 전자신고하거나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 납세자가 소득세를 직접 전자신고할 경우 2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 (신고상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된 상담은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를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2. 코로나19 조기극복, 국세청이 적극 지원합니다.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 (배경)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거의 모든 자영업자의 피해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비상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총력대응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 (대통령 주재 4차 비상경제회의의 4.8.) 모든 납세자의 5월 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발표

◆ 국세청은 매출 급감 등으로 중대한 위기에 직면한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과거 사례>

▶ '19년 4월 산불 피해지역(강릉, 속초 등) 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1만 4천 명)

▶ '18년 10월 태풍 피해지역(전남 보성 등) 소득세 징수유예 (4천 명)

○ (납부기한 연장) 업종이나 지역 구분 없이 모든 납세자의 납부기한을 직권1)으로 '20. 8. 31.(월)까지2) 연장합니다.

1) 납세자는 별도로 기한연장 신청을 할 필요 없음.

2) 납부기한 : 6. 1.(성실신고확인 대상자 6. 30.) → 8. 31.까지 연장

○ (신고기한 연장) 매출 급감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신청을 통해 신고기한도 3개월 내에서 연장 가능합니다.

- (특별재난지역) 피해가 심한 특별재난지역에 주소를 둔 납세자의 신고기한은 직권으로 '20. 6. 30.(화)까지 연장합니다.

* 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청도군·봉화군(3. 15. 선포)

- (세무대리인 감염) 소득세 신고를 대행하는 세무대리인이 감염 등으로 기한내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도 신청을 통해 기한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 연장) 연장된 신고·납부기한 이후에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추가로 기한연장이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① 로그인 → ② 신청/제출 → ③ 일반세무서류 신청 → ④ 민원명 '납부기한' 또는 '신청기한' 검색 → ⑤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 감염이나 격리 등으로 신청이 어려운 영세사업자1)는 ARS(1833-9119)로도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2)할 수 있습니다.

1) 모두채움 신고서 제공 대상자, 단순·기준경비율 신고 대상자 등



.....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신고도움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2) ① 1833-9119 → ② 주민번호입력 → ③ 휴대폰번호 입력 → ④ 기한연장 개월(1~3) 입력 → ⑤ 신청종료 → 추후 휴대폰 문자로 승인 여부 통지

◆ (납세담보) 직권으로 연장된 납세자는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고, 신청에 의해 연장된 영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최대 1억원까지 납세담보가 면제 됩니다.

◆ (환급금 조기 지급) 소득세 환급대상자*가 6. 1.(월)까지 신고하는 경우 전년 보다 일주일 앞당겨(6. 23. 이전) 환급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납부할 세액보다 미리 납부한 세액(원천징수 세액 등)이 많은 경우

기타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 (수출규제 피해 지원)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도 신청을 통해 기한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조조정, 재해 관련 세정지원) 지역산업 구조조정, 재난·재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기한 연장 신청 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

3. 편리한 홈택스를 통해 비대면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세요.

◆ 국세청에서는 납세자가 쉽고 편하게 종합소득세를 비대면(untact)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 서비스를 최대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 (맞춤형 신고서) 납세자는 신고 유형별로 제공하는 5개의 전용화면*에서 쉽고 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 ① 일반 신고자 ② 단순경비율 신고자 ③ 근로소득만 있는 자

④ 종교인 소득만 있는 자 ⑤ 주택임대 분리과세 신고자

-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납세자에게 맞는 신고유형(①~⑤)을 자동으로 안내하고, 다른 신고 유형 선택도 가능합니다.

◆ (신고편의 확대) 올해부터 근로소득만 있는 신고자*는 모바일 홈택스에서도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대상) 두 명 이상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않은 경우, 연말정산시 공제 등이 잘못된 경우 등



- (기준경비율 신고지원) 기준경비율 신고서 작성 시 주요경비를 판단*해 주는 서비스도 올해부터 제공합니다.

* 세금계산서 항목을 분석하여 필요경비(재화매입, 임차료) 해당 여부를 제공

- ◆ (모바일 안내) 납세자가 소득세 신고안내문을 언제든지 열람 가능하도록 모바일로 발송합니다.

* 지난 4. 25.(토)부터 5. 12.(화)까지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음.

- 납세자는 본인인증¹⁾으로 카톡이나 휴대폰 문자²⁾를 통해 안내문을 열람할 수 있으며, 홈택스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 1) 휴대폰 문자인증, 비밀번호 입력이나 생체 인증
- 2) 카카오페이 가입자는 카카오톡, 미가입자는 문자메시지 발송

- ▶ (모바일 안내) 성실신고확인 신고대상, 복식부기 의무자, 금융·근로 등 비사업소득만 있는 납세자, 기준경비율 대상자, 단순경비율 대상자
- ▶ (서면 안내) 모두채움신고서 대상자, 주택임대 분리과세 대상자, 모바일 안내 대상자 중 60세 이상자(2년 연속 세무대리인 신고자는 모바일로 안내)

- ◆ (세금납부 편의) 소득세 신고 후에 출력되는 자진납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이체 수수료 없음) 또는 가상계좌로 이체하여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및 인터넷지로에서 간편결제¹⁾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신용카드²⁾로 납부 가능합니다.

- 1) 앱카드(국민·농협·롯데·삼성· 신한·현대), 페이코, 삼성·카카오·네이버페이
- 2) 카드납부액 한도는 없으며, 납부대행수수료는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

-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납세자는 신고서에 동봉된 납부서에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하거나, ARS신고 시 안내되는 국세계좌나 가상계좌로 납부도 가능합니다.

4. 올해는 주택임대 전면과세 소득세 신고 첫해입니다.

- ◆ (신고대상) 올해부터는 '19년 귀속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납세자도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14~'18년 귀속분은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님. '19년 귀속분부터 과세

- 부부합산 2주택 이하 보유자는 주택을 임대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예시 |

보유 주택	소득세 신고대상 아님		소득세 신고대상
1주택	공시가격 9억 이하	모든 경우	신고대상 없음
	공시가격 9억 초과	보증금만 있는 경우	월세 수입 있는 경우
2주택	보증금만 있는 경우		월세 수입 있는 경우

* 주택수는 부부합산하여 계산하고, 국외소재 주택임대소득은 1주택자도 과세

-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세율 14%)와 종합과세(세율 6~42%)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방법) 분리과세 방식을 선택한 납세자는 홈택스 전용화면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 올해 2월의 사업장현황 신고자료* 등을 활용하여 소득세 신고서 주요 항목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서비스와 종합·분리과세 예상세액 비교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 임대주택 기본 사항(소재지, 면적 등), 월세, 보증금 등

◆ (신고 도움자료 제공) 국세청 누리집*에서 주택임대 과세 대상, 절세 팁(Tip), 자주 묻는 질문 답변, 전자신고 따라 하기 동영상 등을 제공합니다.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성실신고지원 > 주택임대소득 신고 안내

5. 홈택스 「신고 도움자료」를 꼭 확인하세요.

◆ 국세청은 납세자가 성실신고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유용한 자료를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제공합니다.

* (접근경로) 홈택스 > 종합소득세신고 바로가기(로그인) > 신고도움 서비스

- (공통 분석항목) 모든 납세자는 기장의무, 신고에 참고할 수입금액, 소득공제 항목 등 올해 신고에 필요한 자료와

- 업종별 유의사항, 과거 신고상황 분석자료*,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3년간의 소득률, 매출액 대비 주요경비 비율, 업종별 유의사항 등

- 또한, 소득세 신고를 의뢰받은 세무대리인도 신고도움 자료를 납세자와 동일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 신고도움서비스 주요내용 |

구 분	제 공 항 목
I. 기본사항	▶ 소득세 신고안내 유형, ▶ 기장의무 구분(복식부기/간편장부) ▶ 추계신고시 적용할 경비율(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II. 신고시 유의할사항	▶ 사업자 개별 분석 자료 ▶ 업종별 공통 유의사항
III. 신고시 참고자료	▶ 사업장별 수입금액 현황 ▶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 소득 유무 ▶ 중간예납 금액 ▶ 소득공제 항목(국민연금 보험료 등) ▶ 가산세 항목(추계신고시 무기장 가산세 해당 여부 등)
IV. 신고상황 종합분석	▶ 최근 3년간 종합소득세 신고 상황(실효세율 포함) ▶ 최근 3년간 신고 소득률 ▶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현황 분석 ▶ 매출액 대비 주요 판매관리비 현황(당해업체 및 업종평균)

- (개별 분석항목) 84만 명*에게는 빅데이터, 내·외부 과세자료, 현장정보 등을 활용하여 「신고시 유의할 사항」을 제공하니, 신고 전에 꼭 열람하여 신고에 반영하기 바랍니다.

* ('19년) 65개 항목 70만 명 → ('20년) 70개 항목 84만 명

| 신고시 유의할 사항 예시 |

- ① (필요경비 분석) 지출증빙이 필요한 손익계산서 비용항목 합계와 실제 제출한 지출증빙(세금계산서, 급여명세서 등)과의 차이금액 분석
- ② (소득률 분석) 납세자가 신고한 소득률과 업종·지역·수입금액 규모별 평균 소득률을 비교 분석(막대 그래프로 시각화한 자료 추가 제공)
- ③ (빅데이터 분석) 인적용역 사업자에 대한 필요경비 분석, 이월결손금 과다·과소 공제 분석,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적정여부 분석
- ④ (외환자료 분석) 국외플랫폼 사업자(Youtube, Apple, Airbnb, Facebook 등)로부터 수취한 외환자료 (국외 발생 소득) 분석
- ⑤ (해외계좌·차명계좌) 「조세정보 자료 자동교환 협정」에 따라 수집하고 있는 해외계좌 이자소득자료 분석, 차명계좌 분석자료
- ⑥ (추계신고 대사업자 안내) 규모가 큰 사업자임에도 간편장부·기준경비율로 신고한 사업자의 지출 증빙의 적정성 분석

◆ (자기검증 서비스) 홈택스 신고 시 오류 가능성이 높은 항목은 「팝업 메시지*」가 띄워져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예시) ① 중간예납세액 과다 공제 ②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로 신고하면서 감면세액 착오 입력·가산세 누락 ③ 추계신고 방식(기준·단순경비율) 오류

- 주요 공제·감면항목의 경우 납세자가 신고 전에 스스로 검토할 수 있도록 자기검증용 검토



.....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신고도움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서를 제공*하니, 신고서 제출 전에 다시 한 번 확인한 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접근경로)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 또는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성실신고지원→ 종합소득세→ 참고자료실

- ◆ (신고 후 검증) 국세청은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성실신고 할 수 있도록 도움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를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엄정한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제공해 드린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6. 개인지방소득세, 간편하게 신고·납부하세요.

- ◆ (개요) '20. 1. 1.부터 개인지방소득세*를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자치단체 신고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 * 과세표준은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고 세율은 0.6~4.2%(종합소득세의 10분의 1)
 - 행정안전부는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과 협업하여 합동신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 (홈택스 전자신고) 기관간 시스템 연계로 개인지방소득세도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와 자치단체 위택스(www.wetax.go.kr) 실시간 연계
 -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추가 인증 없이 위택스로 바로 이동하게 되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가 자동으로 채워져 원클릭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20. 1. 1.부터 시행 중, 위택스 접속 후 납부서 출력까지 1~2분 소요
- ◆ (합동 신고지원) 모든 시·군·구청에 설치된 신고창구에서 지방세·국세 공무원이 함께 근무하면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지원합니다.
 - 시행 원년인 올해는 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서 작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 단일소득 단순경비를 대상자(F·G유형), 종교인 소득자(Q·R유형)로 자치단체에서 해당 납세자(위택스 "자치단체 합동신고센터 찾기" 검색 가능)에게 별도 안내문 발송 예정



◆ (납세편의)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납세편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신고 간소화) 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 신고서를 받은 납세자에게는 세액까지 기재된 개인 지방소득세 납부서가 동봉되어 있고, 해당세액을 납부하면 신고로 인정됩니다.
- (모바일 신고) 스마트 위택스(모바일)를 통해서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홈택스(PC)나 모바일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된 경우 가능
- (바로바로 가상계좌) 위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즉시 가상계좌가 부여되도록 개선하여 무통장입금,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위택스(PC)나 스마트 위택스에서 전자납부가 가능하고, 본인 통장이나 카드를 소지하고 은행 CD/ATM 기기를 이용하면 납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 (납기알림 SMS)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후 납부기한(8.31.)에 임박하도록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에게 미납사실을 문자로 전송하여 성실납부를 지원합니다.
- (언제든 콜센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제도 변경, 신고·납부 방법 등에 대한 전담 콜센터 (☎ 1661-1000 또는 110)를 운영합니다.
 - * 정부합동민원센터(www.counseling.go.kr) 통해 온라인 상담서비스도 제공

◆ (세정지원)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에 따른 납세자 지원을 위해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합니다.

*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은 종합소득세와 동일함.

◆ 앞으로도,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발굴하고, 국세청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납세자의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 세법 개정사항 요약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확대(소법 § 12, 시행령 § 17의3, § 18②)
 - 비과세 한도 300만원 → 500만원 확대
 -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학생이 받은 보상금을 비과세 대상 추가
- 일정 대여소득의 기타소득 추가 및 필요경비 규정(소법 § 21, 시행령 § 41, § 87)
 -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해 하는 일정규모 이하¹⁾ 물품·장소의 대여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추가하고 필요경비율을 60%로 규정
 - 1) 연 수입금액 500만원 이하, 2)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상권 등의 설정대여소득 등의 필요경비율도 60%(종전 70%) 적용
-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의 연령 조정(소법 § 59의2)



- 아동수당 대상 조정에 따라 7세 이상의 자녀(만 7세 미만의 취학아동 포함)를 자녀세액공제 공제대상으로 조정
 - *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 월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됨에 따른 중복자원을 방지하기 위해 7세 미만의 자녀에 대한 일반적인 자녀세액공제는 폐지
- 기부금세액공제 확대(소법 §59의4)
 - 기부 활성화를 위해 고액기부 기준금액을 종전 '2천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인하 조정
 - * 세액공제율은 기준금액 이하는 15%, 초과분은 30%로 같음
- 임대주택등록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공제금액 차등 적용(소법 §64의2)
 - (필요경비율) 임대주택등록자 60%, 미등록자 50%
 - (공제금액) 임대주택등록자 400만원, 미등록자 200만원
-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시 필요경비 및 공제금액 차등 적용(소령 §122의2)
 - 다음 요건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필요경비 60%, 공제금액 400만원 적용
 -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4년이상),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8년이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8년이상)
 -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 임대료(임대보증금) 연 증가율이 5% 이하일 것
- 임대주택 유형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산출방법 등(소령 §122의2)
 - 임대주택 유형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산출방법
 - (등록임대주택 수입금액)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된 기간(월수로 계산) 동안 발생한 수입금액
 - (미등록임대주택 수입금액)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된 기간(월수로 계산)을 제외한 기간 동안 발생한 수입금액
 - 공제금액* 적용 방법
 - (임대주택 등록시) 400만원 (미등록시) 200만원
 - * 주택임대소득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만 적용되는 공제금액
 - 등록임대주택 수입금액과 미등록 임대주택의 수입금액으로 안분하여 공제금액 산출의 수입금액으로 안분하여 공제금액 산출
- 임대주택 등록자 세액감면 대상 확대(소법 §64의2)
 - 임대주택 등록자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을 분리과세 선택 시에도 적용가능
 - * 4년 임대시 세액의 30%, 8년 임대시 세액의 75%
- 분리과세시 임대주택등록자의 의무임대기간 미준수시 추정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않는 사유 규정(소령 §122의2)
 - 분리과세시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 등록 후 의무임대기간 미준수시 추정 세액



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되, 부득이한 사유 등 가산하지 않는 사유 규정

- 파산, 강제집행에 따라 임대주택 처분 및 임대 불가
-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한 임대주택 처분 및 임대 불가
-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대주택 처분
- 공동사업자의 주택임대 총수입금액 규정(소령 §8의2)
 - 공동사업자의 분리과세 대상 주택임대총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 중 공동사업자에게 분배된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하도록 규정
 - * 공동사공동사업장의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 지분비율)에 따라 공동사업자에게 분배된 수입금액을 합산
- 주택임대보증금 과세(소법 §25)
 -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적정화를 위해 소형주택 면적 및 가액기준 인하
 - i) (면적) 1호(또는) 1세대 당 60㎡ 이하 → 40㎡ 이하
 - ii) (기준시가) 3억원 이하 → 2억원 이하
-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대상 확대(소법 §168①)
 -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도 사업자등록대상 포함
 - 1) '19.1.1. 이전에 주택임대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19.12.31.까지 등록
 - 2) '20.1.1. 이후부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미등록가산세 부과(공급가액×0.2%)
-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자등록 신청시 임대주택명세 제출 의무화(소령 §220)
 -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신청시 임대 중인 주택의 세부 내용을 제출하도록 하여 과세 기반 확충
 - * 소득세법 시행규칙 : 임대주택 소재지, 주택종류, 전용면적 등 기재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의 가산세 전환 및 제재수준 조정(소법 §81⑩)
 -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인 거래분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미발급 금액의 20%(7일 이내 자진신고 또는 자진발급한 경우 10%)를 가산세로 부과
 - * 미발급가산세를 부과받은 경우 현금영수증불성실가산세 적용 배제
-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제외 대상 규정(소령 §147의5)
 - 국세청에서 자료과약이 가능한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 미발급가산세 부과 제외
 -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금 등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의료지원비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대지급금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 확대(소령 별표 3의3)
 -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미용업'과 '약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소매업', '골



프런츱장 운영업'을 의무발급업종에 추가

- 현금영수증 미가맹가산세 대상 합리적 조정(소법 § 81)
 - 미가맹가산세* 부과대상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에는 계산서·세금계산서 발급분 수입금액은 제외
 - *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 1%
-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확대(소령 § 211의2②)
 - 전자계산서 의무발급사업자를 직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과세+면세) 3억원 이상 사업자로 확대
 - 의무발급기간을 7. 1.~다음해 6. 30.로 조정
 - * '19.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사업용계좌 관련 가산세 합리화(소법 § 81⑨)
 - 신규 사업장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고 이미 신고한 기존사업장의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용계좌 미신고가산세* 배제
 - * MAX {①미신고기간수입금액×(미신고기간/ 365)×0.2%, ②가입기간의수입금액×1%}
- 납세조합 조합원 세액공제율 축소(소법 § 150)
 - 납세조합 조합원 세액공제율을 종전 10%에서 5%로 축소
-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을 위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및 관련 가산세 신설(소법 § 164의3, § 81①)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반기별 제출의무
 - (제출의무자) 상용근로소득,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
 - (제출내용) 소득자의 인적사항, 지급액 등
 - (기한)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등 가산세 부과
 - (대상)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미제출· 지연,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 (가산세) 지급금액 × 0.5%(제출기한이 지난후 3개월 이내 제출하는 경우 0.25%)
 - * '19.1.1.~12.31.까지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위 가산세 금액의 50% 적용
-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배제 명확화(소령 § 118의5, § 225의3)
 - 실손의료보험금은 의료비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함을 명확하게 하는 한편, 관련 과세자료 제출의무기관* 규정
 -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회, 군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경찰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소령 § 118의5, 조특령 § 117의3)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출산 1회당 2백만원 이내의 금액)을 의료비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



이달의 세무신고업무

-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배제(소령 § 143④)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 수입금액기준¹⁾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수입금액²⁾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하고 기준경비율 적용
 - 1) 업종별로 6천만원, 3천6백만원, 2천4백만원
 - 2) 업종별로 3억원, 1억5천만원, 7천5백만원
- 추계과세 제도 관련 소득금액 상한배율 적용기한 연장 등(소령 § 143, § 68)
 - 자영업자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고려하여 기준경비율 적용시 소득금액 상한1) 적용기한을 '21. 12. 31.까지 연장
 - 추계신고·결정·경정 시 감가상각비 의제2) 적용 대상에서 사업용 고정자산 중 건축물은 제외
 - 1) 단순경비율로 적용한 소득금액에 배율(복식부기의무자: 3.2, 간편장부대상자: 2.6)을 곱한 금액
 - 2) 사업자가 감가상각비를 미계상한 경우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것으로 의제
- 사업자의 신고의무 관련 수입금액 산정기준 합리화(소령 § 131의2①, § 133①)
 - 비경상적 성격의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가액을 성실신고확인대상 및 외부세무조정 대상 사업자의 의무범위를 결정하는 수입금액 기준에서 제외
 - * (성실신고확인) '20. 2. 11. 이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 (외부세무조정) '20. 2. 11. 이후 외부세무조정을 하는 분부터 적용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노란우산공제) 합리화(조특법 § 86의3①)
 - 공제대상 소득에서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은 제외
 - 공제금액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액	=	$\frac{\text{①공제대상 부금 납입액}}{\text{②공제한도액}} \times \left(1 - \frac{\text{부동산임대소득금액}}{\text{사업소득금액*}} \right)$	
MIN(①, ②)		②공제한도액 : 사업소득금액 -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금액

- 적용시기 : '19.1.1. 이후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
 - * '18. 12. 31. 이전 가입분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법인의 대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거주자의 경우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 96의2)
 - 일정요건을 갖춘 상가임대업자의 5년 초과 임대기간에 대한 소득세감면
 - (대상) 부동산임대수입 75백만원 이하 임대인
 - (요건) 동일한 개인사업자(임차인)에게 5년을 초과하여 상가건물을 임대하되, 임대료를 법



- 정인상률(5% 상한)보다 낮은 수준으로(시행령: 연 3%이내) 인상한 경우
- (세액감면) 5년 초과기간에 대해 상가건물 임대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5% 세액감면
- (적용기한) '21.12.31
- 월세세액공제 대상 확대(조특령 §95)
 - 세액공제대상 주택규모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에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을 임차한 경우를 공제 대상에 추가하여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
-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2의3)
 - 성실사업자·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한 교육비·의료비 소득공제적용기한을 '18.12.31.에서 '21. 12. 31.까지 연장
-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확대 등(조특법 §126의2)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할 때 30% 공제율을 적용받는 도서·공연사용료분(총급여 7천만원 이하지만 적용)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포함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은 '19년 귀속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연장.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는 '19. 7. 1.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 면세점 사용금액에 대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 제외(조특령 §121의2)
 - 면세점 사용금액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조정
-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도서·공연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매출액 인정방법(조특령 §121의2)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매출액 이하의 사업자의 경우 매출 전액을 도서·공연 매출분으로 인정
 - * 문체부 장관이 정하는 매출액(도서(서점) : 3억원, 공연(극단, 공연기획사 등) : 75백만원)
 - 단, 서점의 경우 전체매출 중 도서 매출비중이 90% 이상인 경우로 한함

